

대학원 학생정원 및 학생조교 운영세칙

제정 1998. 3. 1 개정 2006. 5. 4 개정 2020. 2.17 개정 2026. 3. 1
개정 1999. 8.31 개정 2011. 9. 1 개정 2023. 8. 1
개정 2001. 6. 1 개정 2014. 9. 1 개정 2025. 3. 1

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대학원 학생정원 및 학생조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세칙은 본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학과의 대학원 학생정원) ① 본교 각 학과의 대학원 학생정원은 본 대학교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된 연도별 학생정원 범위내로 한다.

② 대학에서는 매년 각 학과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가능 정원만을 각 학과에 배정하고 그 외 정원은 학과의 지원능력에 따라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.

③ 각 학과에서는 매년 대학에서 배정한 정원이외의 증원소요를 결정 7월말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제4조(학생조교의 임용) 학생조교 운영부서에서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학생을 학생조교로 임용할 수 있다. (개정: 2014.9.1.)

제5조(학생조교수당) 학생조교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되는 학생조교수당을 지급한다. (개정: 2014.9.1.)

1. 학생교육조교수당(Teaching Assistantship)은 대학원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와 장학금을 말한다. (개정: 2025.3.1)
2. 학생연구조교수당(Research Assistantship)은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와 장학금을 말한다. (개정: 2025.3.1)
3. 학생행정조교수당(Staff Assistantship)은 대학원생이 행정업무 지원(근로포함)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와 장학금을 말한다. (개정: 2025.3.1)
4. 위에 명시된 학생조교수당 이외의 학생조교수당 제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(개정: 2023.8.1)

제6조(학생교육조교의 배정) 학과별 학생교육조교의 배정은 기초과목, Service 과

목, 실험실습과목 등에서의 학생조교 소요, 교수들의 연구업무 부담정도에 따른다.

제7조(학생조교수당 지급) ① 학생조교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 (개정: 2014.9.1.)

② 학생연구조교수당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을 우선적용하여 지급하되,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운영세칙에 따라 지급한다. (신설: 2014.9.1.)

③ 수료생(전문연구요원 등)은 장학금 통계 산출 시에 재적생으로 본다. (개정: 2023.8.1)

제8조(학생조교의 임용 및 장학금 지급의 제한) (삭제: 2014.9.1.)

제9조(학생조교의 기타 재정지원의 수혜) 대학원생은 학생조교수당을 지급받는 동시에 내·외부로부터 기타 장학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. (개정: 2006.5.4.)(개정: 2014.9.1.)

제10조(삭제)

제11조(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) ① 초과등록자라 함은 석사과정 4학기, 박사과정 4학기 통합과정 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. (개정: 2006.5.4) (개정: 2025.3.1)

② 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은 교비로 지원 할 수 없다. 다만, 각 학과 학과장이 승인한 경우 교육조교에 한하여 교비지원이 가능하며, 교비연구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: 2006.5.4.)(개정: 2020.2.17.)(개정: 2026.3.1.)

③ (개정: 2006.5.4.)(삭제: 2014.9.1.)

제12조(준용)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8월 3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전 규정인 대학원생 학생정원 및 학생조교 운영규정은 이 세칙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5월 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